

# 사료관리법 하위고시 개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대용유배합사료업계의 변화



김 구 현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전무이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사료관리법 하위고시 개정을 위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6차에 걸친 검토회의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2014년 5월 1일부로 개정고시를 시행하였으며, 대용유사업에 관련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용유배합사료의 정의 신설 (공정서 제2조 정의)

대용유배합사료의 정의를 신설하여 일반 배합사료와 명확한 구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용유용배합사료”라 함은 주로 어린(갓난)가축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사료로서 교차오염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대용유용배합사료 제조시설(규칙 별표 1)에서 주로 유장분말, 유당, 유조제품을 혼합하고 필요에 따라 비타민제 등의 보조, 단미사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배합사료를 말한다.

## 2. 주요 유제품의 단미사료의 범위 변경

대용유배합사료를 제조하는데 주요 원료인 유장분말, 유당, 유조제품(치즈밀 등) 탈지분유·전지분유 등을 낙농가공부산물류로 분류하여 동물성 원료로 구분하였다(종전은 낙농가공부산물을 식물성으로 분류하였음).

### <동물성원료>

바. 낙농가공 부산물류	유당, 유장, 유조제품(치즈밀 등), 탈지분유, 전지분유, 치즈
-----------------	-------------------------------------

## 3. 대용유배합사료의 범위 및 성분등록 사항 변경

축우용 대용유는 분유(전지 및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 유당, 유조제품을 40% 이상 배합하여야 하고, 양돈용 대용유는 분유(전지 및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 유당, 유조제품을 30% 이상 배합하도록 하였다.

명 칭	등 록 성 분		
	최소량(%)	최대량(%)	기 타(제15조 참고)
축우용대용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분유(전지 또는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 유당, 유조제품을 40%이상 배합하여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양돈용대용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분유(전지 또는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 유당, 유조제품을 30%이상 배합하여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대용탈지분유 대용유장분유 유청대용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문용 대용유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비타민A(IU)	조섬유, 조회분, 인	(1) 분유(전지 또는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 유당, 유조제품을 10%이상 배합하여야 함. (2) 혼합한 제제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또한 주문용 대용유(분유 및 유장분말, 유당, 유조제품을 10% 이상 배합)를 신설함으로써 축산 경기 변화에 따라 양축농가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 하여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4. 단미사료의 성분등록 사항

단미사료로서의 낙농가공 부산물 등록은 다음과 같이 하도록 되어있으며 다만, 이는 대용유사료 제조업체에는 해당이 없고 국내산 낙농가공 부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또는 수입 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해당 된다.

성분등록의 최대, 최소량은 다음과 같다.

조단백질	수분, 조지방, 조회분	혼합물질이 있는 경우 원료명 및 혼합비율
------	--------------	------------------------

#### 5. 사료원료(낙농가공부산물)로서의 에너지 평가 방법

동물체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동물성 원료로 분류되었다.

낙농가공부산물(유장-분말)
낙농가공부산물(유당)
낙농가공부산물(카제인)
낙농가공부산물(전지분유)
낙농가공부산물(탈지분유)

#### 6. 단미사료(낙농가공부산물)에서 혼합 가능한 사료의 종류

낙농가공부산물에는 생균제, 곡물부산물류, 박류 등을 혼합 할 수 있다.

낙농가공 부산물	낙농가공부 산물	생균제(균체, 효모), 곡물부산물류, 박류
----------	----------	-------------------------

## 7. 사용가능한 부형제의 범위

낙농가공부산물물은 사용 가능한 부형제의 범위에 해당 된다. 그러나 유제품 자체가 고가이고 흡습성이 강하므로 실제로 부형제로 사용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낙농가공부산물	유당, 유장, 탈지분유
---------	--------------

## 8. 수입사료 사후관리 요령의 변경 (제5조, 대상품목)

\* 제5조(대상품목) - 다음 사항이 신설되었다.

- 1)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 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
- 2) 「양곡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사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양허 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한 사료

\* 제6조 2항 - 전용유려품목의 신설(식품으로의 전용을 사전에 방지 목적) 곡물류의 1차 가공품(곡분), 귀리, 낙농가공부산물류(유당, 유장, 유조제품), 대두박(전지대두가공품을 포함), 밀, 보리, 옥수수, 전분류, 콩류, 타피오카(칩 형태), 호밀, 혼합성유지 등

\* 별지 제1-5호 서식내용 중 일부변경 - 변경서식에 따라 2014년 7월까지의 종전서식과 병행사용 하며, 대용유 제조업체는 이 양식에 의하여 월말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9. 수입사료 신고대상품목에 관한 사항 (사료검사요령 별표5)

사료로 판매, 공급,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 사료 및 BSE 관련 사료는 수입신고대상사료에 해당되며 사료용 유조제품(2309.90.9090) 및 대용유용 배합사료(2309.90.1091)는 세관장요건확인품목에 해당되고, BSE 관련 서류검정은 사료검정기관인 한국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아 수입준비를 하여야 한다.

## 10. 유장분말, 유당의 직수입시(수입업자가 판매목적)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 대한 신고 의무

한·미 FTA 등으로 일부 유제품 수입이 자유화 되었다고 하여도 수입업자는 유장분말, 유당의 수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1항에 명시 되어 있으며 제15조 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3항에 명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판매의 금지) 5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 소 등) 1항

### 11. 종합 의견

이번 사료관리법 하위고시 개정은 사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제조시설 및 사료검사, 사료공정의 설정, 수입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에 관련되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많았고 이번 기회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기관, 사료, 축산단체 실무팀의 경험과 지식을 한데 모아 그 부족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용유사료산업은 구제역 이후 계속 사양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국내 업체간에 과당경쟁과 임가공 위주의 시장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지속적인 축산·사료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품질 안전 및 생산성 개선,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기본으로 하고 해외 유제품 원료 및 동남아 대용유 시장개척에 목표를 두고 부지런히 실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자원이 전혀 없이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용유사료업계 현실 속에서 국제 유제품 시장에서 유제품 원료를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회사가 결국 틈새시

장에서 우위를 지키고 생존해 나갈 것이다.

과거 5~6년 전 까지만 하여도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등의 구매물량이 세계 유제품 시장에서 그런대로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나, 지금은 이미 중국을 비롯한 중동국가의 구매력이 월등해 졌으므로 적기의 물량 확보 조차도 점점 어려운 시장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반면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폴란드, 우크라이나, 터어키, 네델란드 등),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공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생산하고 수출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시장구조가 지속 될 것이다. ❏